

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- 의안번호 제224호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동의안은
 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할 경우,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,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 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신설 예정 재단으로 금번 의원발의로 상정된 “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” 제7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
 -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